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01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이인선 · 송언석 · 안철수  
김성원 · 이종배 · 고동진  
서지영 · 박충권 · 유용원  
정동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

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投票마감시각까지”를 “투표마감시각까지(제1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이후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投票마감시각까지”를 “투표마감시각까지(제1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이후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③ (생략)          第175條(開票開始)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u>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          第175條(開票開始)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한다.</u></p>
--	---